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11 선고 2017가단226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중중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망 I의 소송수계인 J

9. 망 I의 소송수계인 K

10. 망 I의 소송수계인 L

변론 종결2018. 8. 21.

판결 선고2018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의 등기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2018. 8. 7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.
 2.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- 피고 G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소영

별지